

착공연기확인서

허가(신고)번호		허가(신고)일자	
건축주			
대지위치			
연기 전 예정일자			
연기 후 예정일자			

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청서에 따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